

동물 사육용 전기기기 히터(Heater) 안전인증(KC) 받은 정품 사용해야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과 계사 내 이산화탄소 발생 등 열악한 환경으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부분의 양계장에서 사용해 오던 등유 온(열)풍기 대신, 난방비를 절감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히터(카본히터)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히터의 효율성이 입증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시범농가를 더 많이 선정해 동물 사육용 전기히터(Heater)를 지원하는 등 전기히터의 사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양계농가에서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는 동물 사육용 전기히터의 상당수가 KC 미인증 제품들인 불법제품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화재와 감전 등 농가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는 불법제품들이 사용되는 것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195품목) 중 동물 부화·사육용 전기기기는 반드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정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 안전인증(KC)이란 국내외 제조업자가 출고 전(수입품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국민 혈세로 농가에 지원해주는 동물 사육용 전기기구 보조사업에서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양장서야할 각 지자체들이 불법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동물 사육용 전기기구 불법제품이 정부사업에 구매되는 것

은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KC 인증품 사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데다, 수년째 이러한 불법제품이 전국 농가에서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보다는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농가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에 불법 전기기구가 구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제품을 수배하여 효능 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전국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농업 지원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KC 인증에 대한 무지(無知) 현상을 계도해 시정해야 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KC 미인증 제품의 형태를 보면 ▲ 카본등 혹은 카본히터라는 명칭으로 양계장에 설치되고 있는 전기히터는 동물사육용 히터(시험규격 : K60335-2-71)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 ▲ 전국에 산재한 온실농가를 대상으로 니노탄소히터 또는 카본히터로 유통되는 전기히터는 온실용 전기히터(시험규격 : K60335-2-30 중 온실용 히터 규정)로 인증 받지 않은 대부분의 제품, ▲ 할로겐 보온등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판매해 왔으나, KC 규격을 만족하지 못해 미인증 불법제품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